

금융결제원을 이용한 지방세 자동이체 운영

— 춘 천 시 —

1. 연구 목적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이 있으나 그중 가장 편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손쉬운 제도는 자동계좌이체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동이체는 자치단체 금고은행과 자동이체업무를 처리하므로써, 타은행의 통장자동이체는 불가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 직접 자동이체 신청접수를 하여 은행의 계좌번호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하여 민원의 소지가 되었다.

또한 특정은행통장에서 자동이체되므로써, 자동이체 타은행 확대운영에 대한 민원인의 개선요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첫째 모든 은행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은행 또는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고지서 내용에 자동이체 신청서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착안 연구하게 되었다.

II. 연구 과정

1. 공공요금(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요금)은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 모든 은행의 통장 이체가 가능하고, 은행에서 접수·신청을 받는다는 점과 고지서에 자동이체 안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제도는
 첫째,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받고 있었으며,
 둘째, 은행은 접수받은 그 자료를 결제원에 송부하고,
 셋째, 금융결제원에서는 신청내역을 해당기관에 인터넷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지방세 자동이체제도에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3. 금융결제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의 자동이체는 “납부자 번호”라는 고유번호를 가장 중요한 키값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계량기번호, 핸드폰의 경우 핸드폰번호, 전화요금의 경우 전화번호 등을 납부자 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를 결제원의 “납부자 번호”로 사용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금융결제원의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지방세 유지보수 업체의 실무자 의견 검토 결과 지방세 자동이체에 접목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2002. 3. 5.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기관으로 등록 후,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지방세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수록할 수 있고,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청구내역을 인출하여 결제원에 송부하는 연결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유지보수 업체에 의뢰 1개월에 걸쳐 개발하여 2002. 4. 3부터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인터넷 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2002. 7. 2일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처리 하게 되었다.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인쇄하여 홍보하였고, 은행에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은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업

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므로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였다.

IV. 홍보 및 추진실적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이면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인쇄·고지하여 홍보하므로서 정기분 지방세 납부시 평균 100여명씩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관내은행과 협조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에게 은행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통하여 300여명이 신청하였다.

2001년 및 2002년 납세편의시책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 납부편의시책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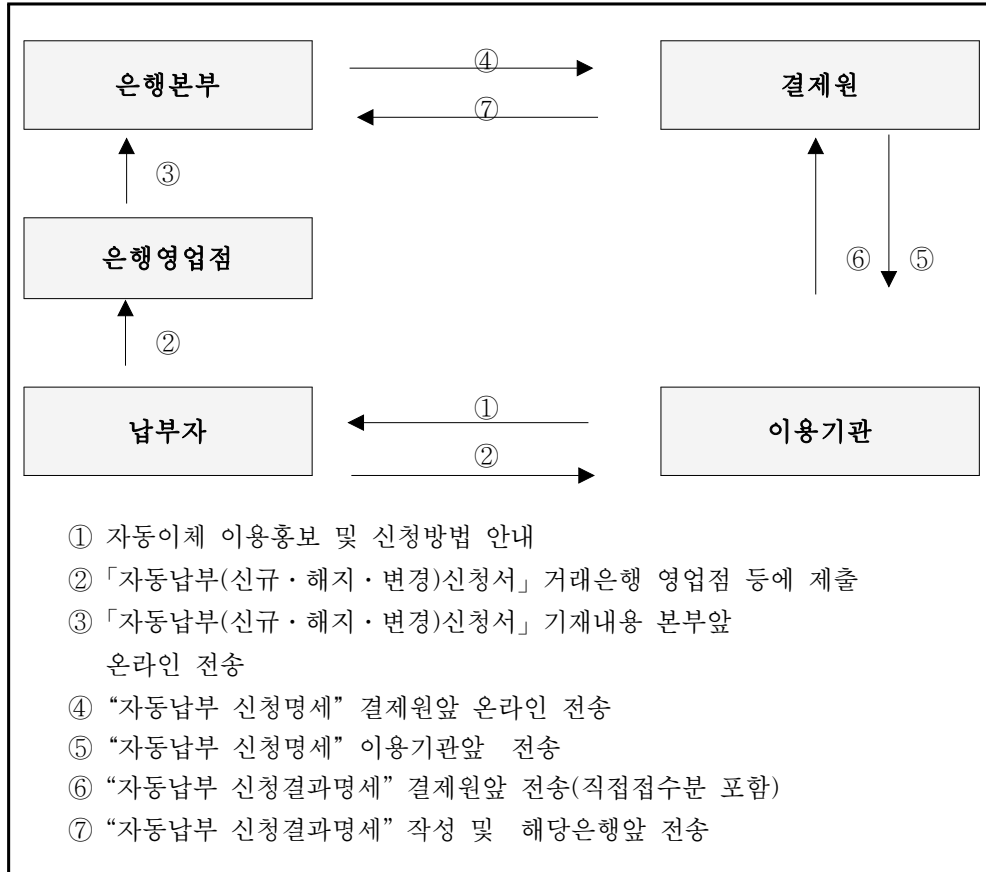
(단위: 건/백만원)

구분	합계		신용카드		인터넷		자동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24,928	7,733	18,578	7,221	2,551	193	3,790	318
2002년	19,141	5,067	8,896	4,242	4,057	352	6,123	473

V. 효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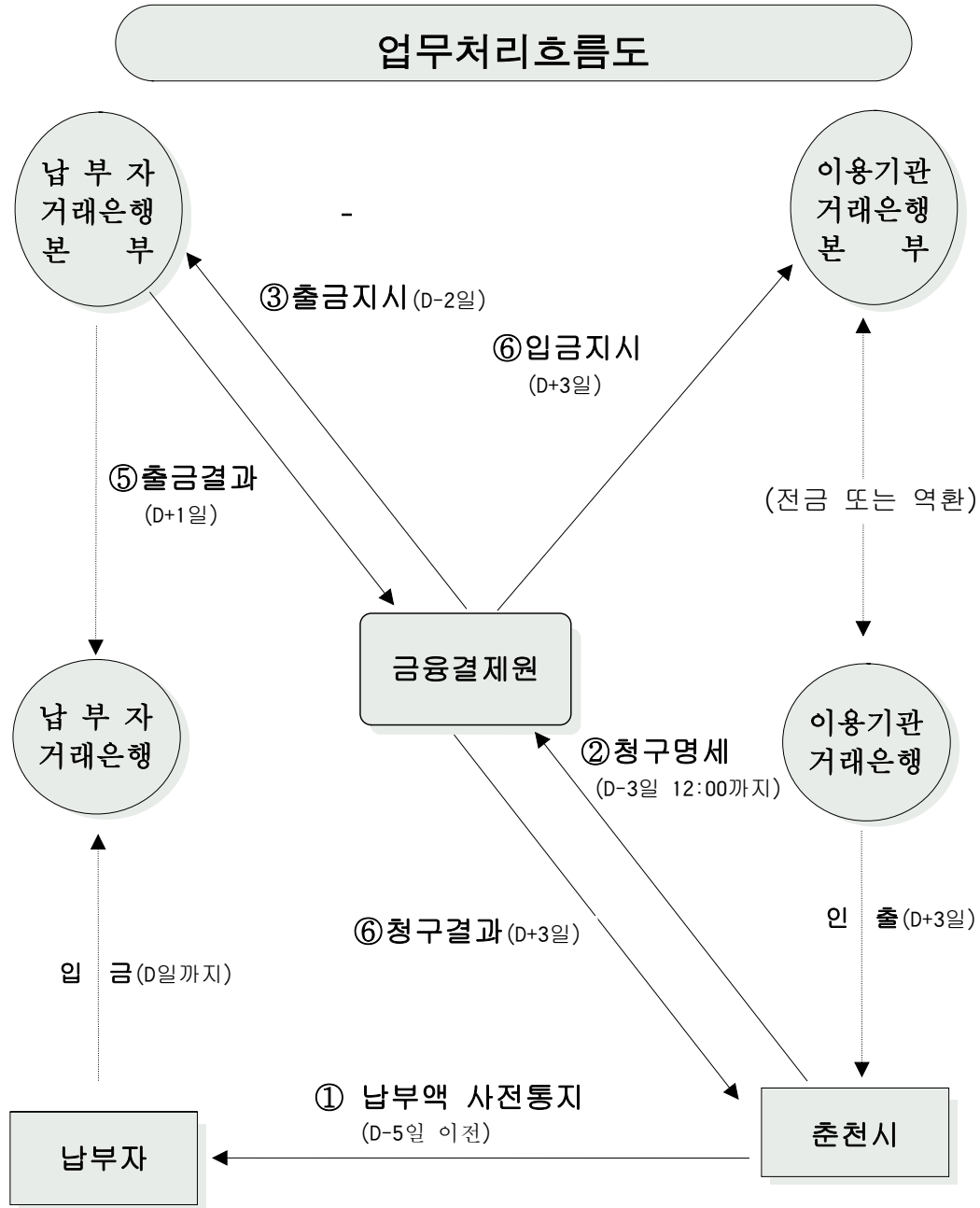
- ▶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과 창구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 ▶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접수하고 접수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자료 송수신하므로 자동이체 접수처리 업무가 전산화되었다.
- ▶ 자동이체 신청을 은행에서 처리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 자동이체 신청 접수를 위하여 별도의 인력이 필요 없다.

VI. 자동이체 신청업무 처리절차



- ▶ 각행 영업점은 납부자로부터 자동납부신청서를 접수하여 단말기에 굵은선 부분을 입력하고 각행 본부 앞 전송, 본부는 취합 후 금융결제원 앞 송부.
- ▶ 금융결제원은 각행 본부로부터 접수받은 자동납부 신청명세를 이용기관별로 분류하여 지로EDI 이용기관은 매일, M/T, F/D, C/T(이하 “전산매체”라 함) 이용기관은 매일 또는 주2회 해당 수취장소 앞 송부.(지로EDI 이용기관은 매일 18:00 이후 수신, 전산매체 이용기관은 매일 또는 월, 목요일 12:00 까지)

VII. 자동이체 청구업무 처리절차



※ D일 : 납기일

- ▶ 이용기관은 해당 납기일전 3영업일 12:00 까지 출금대상자 명단을 수록한 자동이체 청구명세(M/T, F/D, C/T, EDI)를 자동이체 청구서와 함께 수취장소 앞 제출함.(단, EDI인 경우에는 자동이체 청구서를 Fax로 송부할 수 있음)
- ▶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청구명세를 은행별로 분류하여 각행 앞 출금지시함.(출금시각 : 납기일 영업 마감시간 기준으로 출금)
- ▶ 금융결제원은 청구결과명세, 자동이체결과합계표 및 입금통지서를 납기일 후 3영업일까지 이용기관이 원하는 수취장소로 송부함.
- ▶ 출금된 대금은 납기일 후 3영업일에 이용기관의 수취계좌에 입금(출금건당 수수료 50원)

VIII. 소요예산

- ▶ 자동이체 수수료 (결제원에 납부)
자동이체 납부 건당 50원 소요
- ▶ 자동이체 자료 송수신 통신료 (결제원에 납부)
월 66,000원 × 12월 = 792,000원
- ▶ 자동이체 송수신 자료 지방세서버 연계 프로그램 개발(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 : 2,500,000원

지방세 자동이체 이용안내

발 행 처 : 금융결제원 지로업무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7

전 화 : 02-531-1398(승인)
02-531-1394~5(처리)

팩 스 : 02-531-1296

3 사례

(홍보문안)

춘천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춘천시에서는 시민의 납세편익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를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 접수장소 : 전국 모든은행(새마을금고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지속 ☐ 자동계좌이체 지방세(이체일) · 면허세(1월 31일), 자동차세(6월 30일), 재산세(7월 31일) · 주민세(8월31일), 종합토지세(10월31일), 자동차세(12월 31일) ※ 위 지방세 중 정기분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만 인출됨 ☐ 신청내역(단, 자동이체는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수납기관명	기관번호	요금의종류	성명	납부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춘천시청	7002001	지방세			
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통장 인감
					인
※ 본 신청서와 통장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홍보문안은 지방세 통합용 고지서 주소기재란 뒷면에 인쇄